



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사진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type="checkbox"/> 쪽수: 4쪽	친환경건물과장 건물효율회평가팀장	이주영 이경택	02-2133-3590 02-2133-9782
---	--------------------------	----------------	----------------------------------

서울시, 온실가스 다이어트 코치로 나선다..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시행

- 연면적 3천㎡ 이상 민간건물 대상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자율참여 시행
- 동일용도 건물 간 비교로 해당 건물 에너지사용량 자가진단·에너지 효율 척도로 활용
- 에너지사용량 A~E(5등급) 절대평가, 건물 전면 등급 부착..하위등급 건물 무료 컨설팅 제공
- 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 기대”

-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에는 건물주 스스로 에너지사용량을 당국에 신고해서 받은 에너지 등급이 적힌 ‘Energy Star’라는 하늘색 표지판이 걸려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척도로 활용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동시에 기후 위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서울에 마련된다.
- ‘Energy Star(에너지스타)’는 199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에너지부(DOE)가 운영하기 시작한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으로 각 주의 기후, 건축 양식, 에너지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 뉴욕시의 경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대형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25,000ft²(약 2,3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에너지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매년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 자가진단하고, 결과 등급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

- 서울시는 기후위기 주범 중 하나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의 패널티는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모범사례로 자리 잡은 ‘에너지스타’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공공에선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의 경우 패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천 m^2 이상인 비주거 민간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이에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 시는 민간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 및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은 건물에 무료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개인·기업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민간BRP) 등 다방면의 에너지 효율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건물 용도별·규모별 에너지 등급 평가 기준. 끝.

건축물의 용도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단위: kWh/m²)

용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등급	3,000㎡ ~5,000㎡	5,000㎡ ~10,000㎡	10,000㎡ ~20,000㎡	20,000㎡ ~50,000㎡	50,000㎡~
문화 및 집회시설	A	16.2 이하	11.34 이하	9.45 이하	21.6 이하	
	B	65.745 이하	68.175 이하	79.65 이하	118.8 이하	
	C	161.055 이하	183.87 이하	205.74 이하	261.36 이하	
	D	320.22 이하	371.655 이하	440.37 이하	518.535 이하	
	E	320.22 초과	371.655 초과	440.37 초과	518.535 초과	
종교시설	A	33.75 이하	31.995 이하	27.675 이하	35.505 이하	
	B	75.735 이하	80.865 이하	79.65 이하	81.405 이하	
	C	182.385 이하	187.11 이하	190.215 이하	198.855 이하	
	D	318.6 이하	323.73 이하	396.9 이하	349.515 이하	
	E	318.6 초과	323.73 초과	396.9 초과	349.515 초과	
판매시설	A	20.925 이하	32.4 이하	57.24 이하	74.115 이하	66.69 이하
	B	104.22 이하	124.47 이하	139.05 이하	198.585 이하	243.27 이하
	C	274.995 이하	290.655 이하	320.895 이하	372.735 이하	405.135 이하
	D	500.31 이하	602.1 이하	646.515 이하	579.42 이하	592.515 이하
	E	500.31 초과	602.1 초과	646.515 초과	579.42 초과	592.515 초과
의료시설	A	83.295 이하	79.38 이하	70.875 이하	108.54 이하	
	B	209.655 이하	201.555 이하	236.25 이하	398.25 이하	
	C	486.27 이하	479.25 이하	534.87 이하	783.945 이하	
	D	888.84 이하	906.39 이하	1062.72 이하	1153.44 이하	
	E	888.84 초과	906.39 초과	1062.72 초과	1153.44 초과	
교육연구시설	A	22.815 이하	32.67 이하	41.715 이하	10.53 이하	
	B	49.275 이하	72.225 이하	90.045 이하	77.895 이하	
	C	137.16 이하	145.935 이하	152.415 이하	195.75 이하	
	D	356.67 이하	253.125 이하	249.615 이하	475.065 이하	
	E	356.67 초과	253.125 초과	249.615 초과	475.065 초과	
노유자시설	A	43.335 이하	43.605 이하	29.025 이하		
	B	132.975 이하	123.39 이하	155.115 이하		
	C	265.68 이하	310.23 이하	332.775 이하		
	D	572.805 이하	713.34 이하	734.94 이하		
	E	572.805 초과	713.34 초과	734.94 초과		
업무시설	A	33.345 이하	32.4 이하	26.325 이하	19.575 이하	10.665 이하
	B	113.13 이하	139.995 이하	176.85 이하	200.61 이하	187.38 이하
	C	292.275 이하	328.59 이하	339.93 이하	335.88 이하	350.325 이하
	D	509.355 이하	505.98 이하	502.74 이하	477.495 이하	511.65 이하
	E	509.355 초과	505.98 초과	502.74 초과	477.495 초과	511.65 초과
숙박시설	A	48.195 이하	6.345 이하	12.69 이하	7.56 이하	
	B	139.32 이하	108 이하	100.845 이하	97.875 이하	
	C	364.905 이하	320.76 이하	325.35 이하	357.21 이하	
	D	678.915 이하	650.835 이하	704.16 이하	1062.315 이하	
	E	678.915 초과	650.835 초과	704.16 초과	1062.315 초과	
공장	A	25.65 이하	30.645 이하	37.53 이하	19.71 이하	
	B	102.06 이하	125.145 이하	178.74 이하	169.29 이하	
	C	314.145 이하	399.735 이하	620.595 이하	799.875 이하	
	D	1021.545 이하	1402.785 이하	2433.375 이하	3850.2 이하	
	E	1021.545 초과	1402.785 초과	2433.375 초과	3850.2 초과	
창고시설	A	5.805 이하	5.265 이하	9.18 이하	9.585 이하	
	B	25.245 이하	26.865 이하	35.775 이하	39.285 이하	
	C	80.595 이하	81.405 이하	81.81 이하	105.705 이하	
	D	260.28 이하	262.305 이하	199.8 이하	237.735 이하	
	E	260.28 초과	262.305 초과	199.8 초과	237.735 초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A	42.795 이하	41.175 이하	11.745 이하		
	B	134.055 이하	156.87 이하	135.675 이하		
	C	268.245 이하	291.87 이하	272.16 이하		
	D	500.985 이하	503.145 이하	499.095 이하		
	E	500.985 초과	503.145 초과	499.095 초과		

※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에 지역별 가중치(서울 1.35)를 곱한 값임